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4.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4. 10
- 다. 상 정 일 자 : 97. 4. 17(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 나. 제안사유

- 화순군포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제2조 단서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
 - 제7조 "경진회"를 "경진대회"로 제9조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 부 :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 - 44
----------	---------

제출년월일 : 1997. 4. 10.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화순군포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 (안 제2조)
- "경진회"를 "경연대회"로 개정 (안 제7조)
-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개정 (안 제9조)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중 "각호의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하며, 동조 제1호중 "경진회"를 "경연대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단서중 "연서로도 할 수 있다"를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포상대상)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 한 공무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u>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 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제2조 (포상대상) 다만 <u>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u></p>
<p>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u>각호의 경우</u> 에 수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품평회, <u>경진회</u>, 전시회등에 입선한 자 2. (생략) 	<p>제7조 (상장) . . .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경연대회</u> 2. (현행과 같음)
<p>제9조 (포상 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자가 있을때에는 군의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에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u>상신할 수 있다.</u>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u>연서로도</u> <u>할 수 있다.</u></p>	<p>제9조 (포상 절차) <u>추천한다.</u> <u>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u></p>